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16

서 울 행 정 법 원

제 8 부

판 결

사 건	2023구합4940 지방세 및 미납보험료 처분취소
원 고	A
	소송대리인 변호사 정○○
피 고	1.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
	2.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
	3. ○○○○○○공단
변 론 종 결	2024. 5. 14.
판 결 선 고	2024. 8. 13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원고의 피고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, 피고 ○○○○○○공단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16

청 구 취 지

1. 주위적으로 피고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이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한 2007. 4. 9.자, 2011. 2. 9.자 및 2011. 4. 13.자 압류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, 예비적으로 피고 ○○구청장이 2019. 6. 25.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
2. 피고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1. 4. 29.자, 2012. 6. 8.자 및 2013. 7. 23.자 압류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.

3. 피고 ○○○○○○공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07. 5. 15.자, 2014. 2. 20.자, 2015. 3. 3.자 및 2018. 8. 29.자 압류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피고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의 압류 처분 및 압류해제 거부처분

1) 원고는 피고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(이하 '피고 ○○구청장'이라 한다)이 부과한 지방세를 체납하였고, 이에 피고 ○○구청장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. 4. 9. 압류 처분을 하였고, 2007. 4. 18. 압류등기를 마쳤다.

2) 원고는 피고 ○○구청장이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하였고, 이에 피고 ○○구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. 2. 9. 압류 처분을 하였고, 2011. 2. 24. 압류등기를 마쳤다.

3) 이후 원고가 과태료를 추가로 체납하였고, 이에 피고 ○○구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. 4. 13. 압류 처분을 하였고, 2011. 4. 15. 압류등기를 마쳤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16

나. 피고 ○○○○○○공단의 압류 처분

1) 원고는 피고 ○○○○○○공단이 부과한 보험료를 체납하였고, 이에 피고 ○○○○○○공단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. 5. 15. 및 2014. 2. 20. 각 압류 처분을 하였고, 2007. 5. 17. 및 2014. 2. 20.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.

2) 피고 ○○○○○○공단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3. 3. 및 2018. 8. 29. 각 압류 처분을 하였고, 2015. 3. 3. 및 2018. 8. 29.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.

다. 피고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의 압류 처분

1) 원고는 피고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(이하 '피고 ○○구청장'이라 한다)이 부과한 지방세 1,022,390원을 체납하였고, 이에 피고 ○○구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. 4. 29. 압류 처분을 하였고, 2011. 5. 11. 압류등기를 마쳤다.

2) 원고는 피고 ○○구청장이 부과한 과태료 725,000원을 체납하였고, 이에 피고 ○○구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. 6. 8. 압류 처분을 하였고, 2012. 7. 5. 압류등기를 마쳤다.

3) 이후 원고가 과태료 1,396,050원을 추가로 체납하였고, 이에 피고 ○○구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. 7. 23. 압류 처분을 하였고, 2013. 8. 14. 압류등기를 마쳤다.

라. 피고 ○○구청장의 압류해제 거부처분

원고는 2019. 6. 19. 및 2019. 6. 21. 피고 ○○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해제를 신청하였다. 그러나 피고 ○○구청장은 2019. 6. 25.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16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6호증, 을가 제1 내지 7호증, 을나 제1 내지 5호증, 을다 제1, 2,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처분의 위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가 사실상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다.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11. 6. 7. 원고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하였다. ○○세무서와 ○○세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기도 하였다.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처분을 토대로 공매를 하더라도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.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 및 피고 ○○구청장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여 하자가 중대·명백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.

나. 판단

1)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(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9383 판결 등 참조).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·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(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).

2) 피고들의 압류 처분 및 피고 ○○구청장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지방세법, 지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16

방세징수법,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처분의 중대·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)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의 실익이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,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들의 압류 처분 및 피고 ○○구청장의 압류해제 거부 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4)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○○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, 피고 ○○구청장 및 피고 ○○○○○○공단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○○

판사 김○○

판사 송○○ 휴직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

재판장
판 사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16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◯◯시 B에 있는 C건물

[도로명주소] ◯◯시 D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

판매시설 및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◯◯시 B 대 4,798㎡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제지하층 E호 철근콘크리트조 15.60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4,798분의 7.52

끝.